

의안 번호	1488	[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8. 11. 8.(목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11. 9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11. 30.(금)

2. 제안이유

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여 연구 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조문 정비(안 제16조제1항)
 - 정책연구용역 및 평가 결과 공개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4. 근거법규 :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54조

5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